

2022년도 정기총회 결과보고

1 회의 개요

- ① 일 시 : 2022년 4월 28일(목) 15시 ~ 15시 16분
- ② 장 소 : 줌(온라인회의/중계:연합회 회의실)
- ③ 참석인원 : 줌(온라인회의) - 63명 ~ 89명 유지(성원 60인)
 - 의 장 : 김돈순 회장
 - 사 회 자 : 이성진 사무총장
 - 감사보고 : 이새롬 감사
- ④ 상정안건
 - 보고사항
 1. 전차회의록 보고
 2. 감사 보고
 3.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
 - 심의사항
 1.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의 건
 2. 규약 개정(안)

2 논의결과(주요내용)

(개회선언: 15시 00분)

□ 김돈순 회장 인사말씀

□ 보고사항

1. 전차회의록 보고
2. 감사 보고
3.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

① 주요내용

1. 전차회의록 보고
2. 감사 보고

□ 자체 감사 지적사항

2022. 1. 25.(화)

- 사무처 운영 관련
 - 물품 구입 및 제작 후 증빙사진 및 검수조서 첨부 권고
- 퇴직자 전별금 기금 적립 관련
 - 경기단체연합회 회원의 퇴직자 전별금 적립 권고
- 규정 관련
 - 상조회 운영 규정 관련 : 지급 유예기간 신설 권고
 - 사무처 직원 복리후생 관련 : 연장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규정 신설 권고

□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<2022. 4월>

구 분	처분요구사항	조치 결과	완료 여부
사무처 운영 관련	○ 물품 구입 및 제작시 증빙사진 및 검수조서 첨부 권고	○ 증빙 업데이트 및 행사사진 첨부	완료
퇴직자 전별금 적립 관련	○ 퇴직자 전별금 별도 적립 권고	○ 2023년도 회비 인상 후 예산 검토 후 시행 예정	진행중
규정 관련	○ 상조비 지급 유예기간 신설 권고	○ 규정 심의 및 이사회 검토 후 회비규정 개정에 반영 예정	진행중
	○ 사무처 직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규정 신설	○ 사무처 처무 규정 개정 - 규정 개정/22.3.29(이사회)	완료

② 참석회원 주요 발언: 없음

③ 논의 결론 : 원안접수

3.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심의 건

① 주요내용

○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

① 2022년도 사업 계획

구분	회 의		사 업(행 사)			종목단체
	이사회	총회	연수회	화합한마당	워크숍	일정
계	3	1	2	1	3	3

○ 세부일정(안)

월	구 분	일 자	행 사 명	장소	대 상	비고
2월	사 업	미정	2022년도 사무처장 워크숍	미정	사무처장	
	종목단체	2월4일~2월20일	제 24회 동계올림픽	베이징	동계OG 종목	
3월	회 의	미정	1차 정기(결산)이사회	서울	임 원	
	회 의	미정	2022년도 정기총회	서울	연합회 회원	
6월	사 업	미정/3일	회원종목단체 워크숍	미정	종목단체 직원	
7월	회 의	중순/1일	제 2차 정기이사회	서울	임 원	
8월	사 업	중순/1일	2022년도 하계연수회	미정	연합회 회원 및 가족	
9월	종목단체	9월10일~9월25일	제 18회 아시안게임	항저우	AG 종목	
10월	전국체전	10월7일~10월13일	제 103회 전국체육대회	울산	전국체전 종목	
12월	회 의	미정/1일	제 3차 정기이사회	서울	임 원	
	사 업	미정/2일	회원종목단체 워크숍	미정	종목단체 직원	
	사 업	미정/1일	2022 체육인 소통과 화합 한마당	서울	연합회 회원 및 가족	
	사 업	미정/2일	2022년도 동계연수회	서울	연합회 회원 및 가족	

② 2022년도 예산(안)

<요약 수입·지출 예산(안) 내역>

(단위: 원)

수 입				지 출				
관	항	목	금액	관	항	목	금액	
전기 이월	이월	전기이월	135,887,974	경 상 비	운영비	사무행정비	23,454,400	
	소계①		135,887,974		인건비	급여, 퇴직적립금(기금)	60,228,840	
사업 수입	회비	회비(회원)	115,200,000			급여, 퇴직적립금(자체)	20,653,597	
	회의실	대관료	5,000,000			복리후생비	6,800,000	
	소계②		120,200,000	소계①		111,136,837		
보조 금	대한 체육회	행정보조비	18,000,000	상 조 비	상조비	본인 결혼	3,000,000	
		급여보조비	55,596,000			자녀 결혼	1,500,000	
		퇴직적립금	4,632,840			자녀 출산	3,000,000	
		계	78,228,840			조의금	1,500,000	
	연수회					퇴직자 전별금	20,000,000	
	대한체육회		18,000,000			상조기 설치	100,000	
	특별 찬조	소통과 화합 한마당			소계②		29,100,000	
		대한체육회		19,000,000	회 의 비	회의비	정기 총회	2,000,000
		종목단체		5,000,000			이사회	2,000,000
		소통과 화합 한마당					기타 회의비	4,000,000
		대한체육회		19,000,000			소계③	
	종목단체		8,000,000	사 업 비	연수회	직원 연수회	39,000,000	
계		50,000,000	워크숍			1,000,000		
소계③		128,228,840	화합한마당			소통과 화합 한마당	18,000,000	
잡수 입	이자	결산이자	150,000	기 타	업무 추진비	임원 업무활동비	24,000,000	
	소계④		150,000			대외활동비 및 출장비	3,000,000	
						소계④		86,000,000
						예비비	예비비	예비비
				기타	예탁금반납			12,430
								소계⑤
				합계		244,249,267		
				차기이월(22.12.31)		140,217,547		
총 계			384,466,814	총계			384,466,814	

② 참석회원 주요발언: 없음

③ 논의결론: 원안접수

□ 심의사항

1.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의견

① 주요내용

- 2021년도 주요 사업결과 및 회계 결산 보고

<1> 사업결과 - 주요 내용 : 하단 참조

1. 경기단체연합회 회원 복지향상

① 워크숍 대체 소통강화 행사

- 일 시 : 2021년 7월 22일(목) ~ 30일(금)
- 지급단체 : 대한검도회 외 66단체
- 대 상 : 각 종목단체 상근근무자(임·직원)
- 지급장소 : 올림픽공원 내 남2문 B구역 p1주차장
- 지급품목 : 현금 593만원(593 x 1만원), 쿠폰 593장(593명 x 1장),
링티 - 1,186병(593 x 2병), 그랑프리 - 1,779병(593 x 3병)

② 회원종목단체 협찬음료 지급

- 지급대상 : 2021년도 3분기 사업 및 행사 지원 요청 단체(29단체)
- 지급일시 : 2021년 11월 23일(화) 13시 30분 ~ 16시
- 지급장소 : 올림픽공원 내 남2문 B구역 p1주차장
- 지급품목 : 링티 15box(10,440ea) 약 100만원 상당

연번	단 체 명	연번	단 체 명	연번	단 체 명	연번	단 체 명
1	검 도	9	배 구	17	요 트	25	탁 구
2	게 이 트 볼	10	빙 상	18	우 슈	26	태 권 도
3	국 학 기 공	11	사 팍 타 크 로	19	유 도	27	택 건
4	근 대 5 종	12	수 상 스 키	20	육 상	28	파 크 골프
5	당 구	13	아 이스 하 키	21	자 전 거	29	펜 싱
6	레 슬 링	14	스 퀴 시	22	족 구	계	29단체 435box 10,440ea
7	롤 러	15	승 마	23	컬 링		
8	바 이 애 슬 론	16		24	킥 복 심		

③ 코로나19 위로지원금 지급

- 지급대상 : 경기단체연합회 회원(2021년도 회비 미납제외)
- 지급일시 : 2021년 12월 20일(월) ~ 2021년 12월 31일(금)
- 지급금액 : 1인당 현금 100,000원 / 계좌이체
- 지급예산 : 61단체 467명, 46,700,000원
- 484명 중 467명(1차 289, 2차 88, 3차 90)

2. 코로나19 사태 관련 연합회 활동

① 「코로나19」 극복 체육인 헌혈 운동

- 일 시 : 1차 : 2021년 5월 7일(금) 10시 ~ 16시
2차 : 2021년 5월 25일(화) 10시 ~ 16시
- 장 소 : 올림픽공원 내 남2문 주차장
- 대 상 : 체육단체 임·직원 및 체육가족 등

<2> 2021년도 결산 - 주요 내용

(단위: 원)

수입				지출				
관	항	목	금액	관	항	목	금액	
전기 이월	이월	전기이월	129,794,514	경 상 비	운영비	사무행정비	35,454,523	
	소계①		129,794,514		인건비	급여, 퇴직적립금(기금)	59,631,000	
사업 수입	회비	회비(회원)	118,830,000			급여, 퇴직적립금(자체)	7,920,768	
	회의실	대관료	4,550,000			복리후생비	6,800,000	
	소계②		123,380,000	소계①		109,806,291		
보조 금	대한 체육회	행정보조비	18,000,000	상 조 비	상조비	본인결혼	3,300,000	
		급여보조비	55,044,000			자녀결혼	600,000	
		퇴직적립금	4,587,000			자녀출산	2,200,000	
		계	77,631,000			조의금	900,000	
	연수회					퇴직자 전별금	25,040,000	
	대한체육회		-			상조기설치	-	
	특별 찬조	회원종목단체		-	소계②		32,040,000	
		체육인소통과화합한마당			회 의 비	회의비	정기총회	450,225
		대한체육회		-			이사회	1,065,500
		회원종목단체		-			기타 회의비	1,577,100
		워크숍대체소통강화지원			소계③		3,092,825	
		대한체육회		5,930,000	연수회	직원연수회	-	
		계		5,930,000		워크숍	-	
		소계③		83,561,000		재난지원금	코로나19 재난지원금	46,860,000
잡수 입	이자	결산이자	123,576	사 업 비	화합한마당	소통과 화합 한마당	-	
	소계④		123,576		소통 강화	소통 강화 지원	5,930,000	
			업 무 추 진 비		사무총장	2,400,000		
					대외활동비 및 출장비	776,000		
					대외 업무추진비	66,000		
			소계④		56,032,000			
			예 비 비		예비비(기금, 자체)	-		
					소계⑤		-	
			합계		200,971,116			
			차기이월(21.12.31)		135,887,974			
총계			336,859,090	총계		336,859,090		

② 참석회원 주요발언: 없음

③ 논의결론: 원안의결

2. 규약 개정(안)

① 주요내용

<1> 경기단체연합회 규약 개정(안)

- (제2조) 목 적 조항 신설 【자체 정비사항】
 - (제2조 개정 및 신설) 연합회의 목적 구분과 가입단체의 정체성 구분
- (제11~13조) 선임·선출 임원에 대한 구분 규정 개선 【자체 정비사항】

- (제11조 1 신설) 궐위 관련 조항 신설
 - (제12조 개정) 임원 선출방법 조항 분리
 - (제13조 신설) 임원 선임방법 조항 분리
 - (제22조) 이사회 기능 규정 개선【자체 정비사항】
 - (제22조 5 신설) 규정 제·개정 조항 신설
 - (제22조 7 신설) 상조회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
 - (제33조 2, 제 11장) 규약 내 금액 명기 부분 회비 규정 신설로 인한 삭제
 - 【자체 정비사항】
 - (제33조 2 개정) 월회비 금액에 관한 조항 회비 규정으로 이동
 - (제11장 삭제) 상조회 운영 규정 회비 규정으로 이동
 - (제36조) 사무처 복무규정 개정【자체 정비사항】
 - (제36조 개정) 사무처 규정 개정으로 규정 간소화
 - (별표1) 업무추진비 기준표 사무처 규정으로 이동으로 인한 삭제【자체 정비사항】
 - (별표 1 삭제) 사무처 규정 개정으로 규정 이동
- 〈2〉 경기단체연합회 규약 개정(안) 신·구 대조표

- 신·구 대조표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사유
<p>제2조(목 적) <u>본 연합회</u>는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긍지를 가지고, <u>회원</u>의 단결된 역량을 결집하여 체육행정의 효율을 높이고, 회원 사이에 상경하애(上敬下愛)의 미풍과 상부상조의 협동심을 함양함으로써 연합회 전체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2조(목 적) <u>1. 연합회는 대한민국 체육행정의 최일선에서</u>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<u>회원종목단체</u>의 단결된 역량을 결집하여 체육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상부상조의 협동심을 함양함으로써 연합회 전체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.</p> <p><u>2. 연합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원종목단체 중앙 사무처들의 연합 단체로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의 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목적에 대한 일부 문구 수정 ■ 연합회 구성에 대한 항 신설
<p>제5조(구 성) 본 연합회는 대한체육회 <u>가맹단체</u>(정,준가맹 및 인정단체)전 직원으로 구성한다(직원이라 함은 각 종목단체의 사무처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종목처장 및 직원을 총칭한다).</p>	<p>제5조(구 성) 본 연합회는 대한체육회 <u>회원종목단체</u>(정,준가맹 및 인정단체)전 직원으로 구성한다(직원이라 함은 각 종목단체의 사무처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종목처장 및 직원을 총칭한다)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맹단체 -> 회원종목단체 문구 수정
<p>제11조(임 기) 1~3 “생략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 <조 신설></p>	<p>제11조(임 기) 1~3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<u>4. 선출임원의 결원 시 총회에서 보선한다.</u></p> <p><u>제11조 1 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) 1.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2.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 1호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결원에 대한 항 이동 ■ 회장 궐위 직무대행 조 신설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사유
<p>제12조(선임방법) 임원 <u>선임방법</u>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회장, 사무총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 되, 회장은 종목처장 중 에서 선출하며, 사무 총장은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종목처 장과 직원 중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. 단, 회 장,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단독 출마의 경우 회원의 동의 를 얻어 추대를 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 야한다.</p> <p>제12조(선출방법) 임원 <u>선출방법</u>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회장, 사무총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 되, 회장은 종목처장 중에서 선출하며, 사무 총장은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종목처 장과 직원 중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. 단, 회 장,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단독 출마의 경우 회원의 동의 를 얻어 추대를 할 수 있다.</p> <p>2. 임원 선출을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 회를 둘 수 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출임원 선출 방식 조명 변경 ■ 임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신설
<p><u><조 신설 및 항 이동></u></p> <p>2. 선임임원(부회장 및 이사)은 회장이 임명 한다.</p> <p>3.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</p> <p>4.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</p>	<p>제13조(선임방법) 임원 <u>선임방법</u>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선임임원(부회장 및 이사)은 회장이 임명 한다.</p> <p>2.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</p> <p>3.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임임원 선임 방식에 대한 조 신설 및 이동
<p>제21조(기능)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 결한다.</p> <p>1~4 “생략”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각종위원회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6. 규약 상 그 권한에 관련된 사항</p>	<p>제22조(기능)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 결한다.</p> <p>1~4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5. <u>규정 제정 및 개정</u>에 관한 사항</p> <p>6. 각종위원회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7. <u>상조회 운영</u>에 관한 사항</p> <p>8. 규약 상 그 권한에 관련된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 이동 ■ 규정 제정 항 신설 ■ 상조회 운영 항 신설
<p>제32조(재 정) 본 연합회의 세입은 다음의 수익금에 의한다.</p> <p>1. “생략”</p> <p>2. 월 회 비: <u>회원 1인당 20,000으로 하고 소속 종목단체에서 부담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.</u></p> <p>3~6 “생략”</p>	<p>제33조(재 정) 본 연합회의 세입은 다음의 수익금에 의한다.</p> <p>1. 기 금</p> <p>2. 월 회 비: <u>회원 1인당 20,000으로 하고 소속 종목단체에서 부담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.</u></p> <p>3~6 “현행과 같음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 이동 ■ 월회비의 금액 부분 회비 규정 제정으로 삭제
<p>제35조(사무처)</p> <p>1~4 “생략”</p> <p>5. <u>사무처 직원 연봉 기준</u></p> <p>① <u>직원의 급여는 연봉개념으로 지급하며, 직원의 연봉조정은 매년 임금인상률(공무원 임금인상율)을 감안하여 조정한다.</u></p>	<p>제36조(사무처)</p> <p>1~4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5. <u>사무처 직원 연봉 기준</u></p> <p>① <u>직원의 급여는 연봉개념으로 지급하며, 직원의 연봉조정은 매년 임금인상률(공무원 임금인상율)을 감안하여 조정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 이동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사유				
<p>② 명절, 휴가 등 특별상여 외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방법,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 반영비율 등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6. 사무처 업무추진비 기준</p> <p>①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>7. 사무처 복무규정 기준</p> <p>① 사무처 복무규정은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규정(2019.03.11. 제정)를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.</p> <p>8. 사무처 위임전결 내규</p> <p>① 사무처 위임전결 내규는 경기단체연합회 위임전결내규(2019.03.11. 제정)를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.</p> <p>9. 사무처 여비규정</p> <p>① 사무처 여비규정은 경기단체연합회 여비규정(2019.12.20. 제정)를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.</p>	<p>② 명절, 휴가 등 특별상여 외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방법,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 반영비율 등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6. 사무처 업무추진비 기준</p> <p>①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.</p> <p>5. 사무처의 복무규정은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규정 및 위임 전결 내규를 따르며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.</p> <p>8. 사무처 위임전결 내규</p> <p>① 사무처 위임전결 내규는 경기단체연합회 위임전결내규(2019.03.11. 제정)를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.</p> <p>9. 사무처 여비규정</p> <p>① 사무처 여비규정은 경기단체연합회 여비규정(2019.12.20. 제정)를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무처규정 중복 항목 간소화 및 위임전결 등 규정 항목 				
<p>제11장 상조회 운영</p> <p>제36조(규 정) 상조회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세부내용은 상조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>(본 규정 적용 대상자는 3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되,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본인결혼 및 조의금(부모)은 적용 대상으로 한다.)</p> <p>1. 축 의 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본인의 결혼(일금 30만원) ◆ 자녀의 결혼(일금 30만원) ◆ 자녀출산 (일금 20만원) <p>2. 조 의 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본인의 사망(일금 1백만원) ◆ 부모 및 처자의 사망(일금 30만원) <p>3. 퇴직전별금: 1년당 일금 10만원</p>	<p>제11장 상조회 운영</p> <p>제36조(규 정) 상조회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세부내용은 상조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 <p>(본 규정 적용 대상자는 3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되,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본인결혼 및 조의금(부모)은 적용 대상으로 한다.)</p> <p>1. 축 의 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본인의 결혼(일금 30만원) ◆ 자녀의 결혼(일금 30만원) ◆ 자녀출산 (일금 20만원) <p>2. 조 의 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본인의 사망(일금 1백만원) ◆ 부모 및 처자의 사망(일금 30만원) <p>3. 퇴직전별금: 1년당 일금 10만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11장 회비 규정 제정으로 인한 삭제 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별 표</td> </tr> <tr> <td>[별표 1]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기준표 (단위 : 원)</td> </tr> </table>	별 표	[별표 1]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기준표 (단위 : 원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별 표</td> </tr> <tr> <td>[별표 1]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기준표 (단위 : 원)</td> </tr> </table>	별 표	[별표 1]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기준표 (단위 : 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무처 규정 내 임원 업무추진비 규정 신설로 인한 별표 삭제
별 표						
[별표 1]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기준표 (단위 : 원)						
별 표						
[별표 1]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기준표 (단위 : 원)						

현 행			개 정(안)			개정사유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 분</th> <th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무총장</td> <td>업무추진비 (무통장입금)</td> <td>3,600,000 (300,000X12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	금 액	사무총장	업무추진비 (무통장입금)	3,600,000 (300,000X12회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 분</th> <th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무총장</td> <td>업무추진비 (무통장입금)</td> <td>3,600,000 (300,000X12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	금 액	사무총장	업무추진비 (무통장입금)	3,600,000 (300,000X12회)	
구 분		금 액																
사무총장	업무추진비 (무통장입금)	3,600,000 (300,000X12회)																
구 분		금 액																
사무총장	업무추진비 (무통장입금)	3,600,000 (300,000X12회)																

② 참석회원 주요발언: 없음

③ 논의결론: 원안의결

기타사항

① 주요발언 : 없음

(폐회선언: 15시 16분)

3 참석회원 현황 / 사진

○ 회원 508명 중 63 ~ 89명

